

판매개시일_2025.01.01
약관개정일_2025.09.01

무배당

IBK e-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

2501

약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 및 이용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이 고객권리안내는 고객님께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신 고객님에게 동의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와 관련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IBK연금보험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활용할 것이며, 동의하신 범위 이상으로 불법·부당하게 제공·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I.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님께서는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 보험계약 체결 3개월 이후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상담,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콜센터 1577-4117, 1644-4117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ibki.co.kr) 또는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2. 영업목적 이용 동의 철회, 연락 중지 요청

-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고객님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목적 이용 동의 철회 또는 연락 중지 청구는 콜센터 1577-4117, 1644-4117 또는 저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bki.co.kr) 사이버창구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으며(사이버창구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3. 제공 사실 통보 요구

- 고객님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본사 고객안내데스크 방문, 회사 콜센터 1577-4117, 1644-4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최근 1년간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제공 받는 자, 그 이용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해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통보 또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조회 · 열람 및 정정청구

- 고객안내데스크, 콜센터 1577-4117, 1644-4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를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 제공 또는 열람한 고객님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 IBK연금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Ⅱ. 신용정보의 제공·조회·이용 및 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신용정보관리·보호부서 : 02-2270-1652
(구주소)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신주소) 서울시 중구 칠판로 37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무배당 IBK e-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_2501 약관

〈목 차〉

1. 약관 이용 Guide Book	7
2.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13
3. 무배당 IBK e-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_2501 약관	19
4. 보험용어 해설	72
5. 약관에서 인용한 법령내용(가나다 순)	73
6. 상생금융 보너스특약 약관	111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Guide Book



※ 同 Guide Book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 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보험약관
(주계약, 특약)

■ 주계약(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 특약(특별약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용어해설 및
색인 등

약관 이해를 돋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해설, 가나다順 특약 색인,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 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 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4**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폭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P 25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영상 자료

2**청약 철회**

제17조(청약의 철회)

P 37



영상 자료

3**계약 취소**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P 39



영상 자료

4**계약 무효**

제20조(계약의 무효)

P 41



영상 자료

5**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 33



영상 자료

6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P 56



영상 자료

7 부활(효력회복)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P 57



영상 자료

8 해약환급금

제35조(계약자의 일의해지)
제38조(해약환급금)

P 60

P 61



영상 자료

9 보험계약대출

제39조(보험계약대출)

P 61



영상 자료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6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쉽게 이해하는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 요약서 P 13

2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체크항목 P 9

3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 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보험용어 해설 P 72

4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당사 홈페이지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QR코드 P 8

5

'약관에서 인용한 법령내용'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P 73

6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MEMO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I.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 IBK연금보험
- 보험상품명 : 무배당 IBK e-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_2501
- 보험상품의 종목 : 연금저축보험

01. 상품의 주요 특징

순수연금보험	적용이율
사망보장이 없어 남녀노소 환급률 동일	-가입 후 5년이내: 확정금리 적용 -가입 후 5년초과: 공시이율(변동금리)
0세 ~ 최대 77세 누구나 가입가능	유연한 자금관리
고혈압, 당뇨, 암 등 질병무관	추가납입 및 선납 가능 보험료 납입유예
	다양한 연금형태 종신형/확정형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IBK e-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_2501

- ① **무배당** :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② **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은 장기적으로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주목적인 보험 상품이며, 단기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은행의 저축성 상품과는 다릅니다. 소득세법에 정한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금리연동형** :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다만, 적립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확정이율 적용으로 합니다.

저축성보험
[사망, 상해, 질병 등]



금리연동형
[적용금리변동]



예금자보호

제3자보험사
보호금융상품
가입료 면제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모되는 경비 및 결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0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① 저축성보험



- ! 주의 ① 이 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② 이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금리연동형 보험



- ! 주의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 됩니다.
단, 적립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확정이율 적용으로 합니다.
② 등 이율은 납입한 주계약(또는 적립)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③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5년내내 1.25%, 5년초과 10년내내 1.00%, 10년초과 0.50%입니다.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이 최저한도

③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 주의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② 이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됩니다.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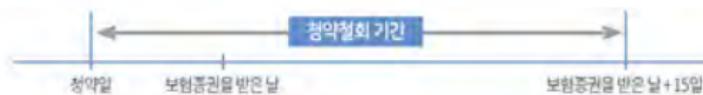


0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제17조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주의
- ①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 한 경우
 -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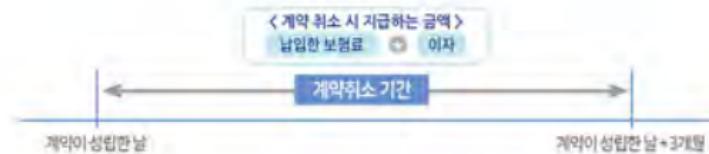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제19조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03.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제20조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4. 보험계약前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제14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주의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前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전화 등 등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고지협정, 당뇨병으로 90일간 무아씨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길 병원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네.

법률자식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 했다구요!



청약서 질문표에는 다르게 기재하셨았어요.

0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제32조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 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하)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시>



- 납입연체:** ①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② 유니버설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06.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제33조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07. 보험계약대출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제39조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원금	공제금액	이자	계
1,000 원	500 원	5 원	505 원	495 원



08.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제6조, 제7조

-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구 접수일로부터 지급일까지 3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무배당 IBK e-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_2501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1
제1조 【목적】	21
제2조 【용어의 정의】	2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5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5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5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5
제6조 【보험금의 청구】	26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26
제8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8
제9조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29
제10조 【주소변경통지】	31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31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31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32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32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33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35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36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36
제17조 【청약의 철회】	37
제18조 【피보험자의 범위】	39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9
제20조 【계약의 무효】	41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41
제22조 【보험나이 등】	42
제23조 【계약의 소멸】	43
제24조 【계약의 이전】	44
제25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45
제26조 【특별계정의 운용】	49

제5관 보험료의 납입	50
제27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50
제28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51
제2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51
제30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52
제31조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에 관한 사항】	54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56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57
제34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59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60
제3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60
제35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60
제3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60
제3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61
제38조 【해약환급금】	61
제39조 【보험계약대출】	61
제40조 【배당금의 지급】	62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63
제41조 【분쟁의 조정】	63
제42조 【관할법원】	63
제43조 【소멸시효】	63
제44조 【약관의 해석】	64
제45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64
제4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65
제47조 【개인정보보호】	65
제48조 【준거법】	66
제4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66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67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69
〈별표3〉 공제금액 안내표	71

무배당 IBK e-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_2501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하는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입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바.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사.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납입기간)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아. 납입한도: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한도를 말하며,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액

은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 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하여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일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매일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날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이자 계산법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후 원리금

$$1) \text{ 단리계산법: }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 100\text{원} \times 10\% = 120\text{원}$$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2) \text{ 복리계산법: }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times 10\% = 121\text{원}$$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일단위-연단위 복리 계산법

복리는 단위기간에 따라 연단위 복리, 일단위 복리 등으로 나뉘지며 단위기간 후 원리금은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text{원금} \times (1 + \text{단위기간 복리})^{\text{단위기간}} = \text{단위기간 후 원리금}$$

상기 계산법에 따라 연단위 복리와 일단위 복리는 아래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1 + \text{일단위 복리})^{365\text{일}} = (1 + \text{연단위 복리})^1$$

예시) 원금 1원, 일단위 복리 0.01%인 경우 연단위 복리 계산 1년 후 원리금은 $1 \times (1 + 0.01\%)^{365\text{일}} = 1.0371$ 이고 일 단위 복리와 연단위 복리 관계식에 의해, $1.0371 = (1 + \text{연단위 복리})^{1\text{년}}$ 이므로 연단위 복리는 3.71%

- 다. 평균공시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현재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일 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라.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한 달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해당일이 없는 달의 예시

① 최초계약일이 2020년 2월 29일일 때, 1년 후의 연계약해당일은 2021년 2월 28일

→ 2021년에는 계약해당일(2월 29일)이 없으므로,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② 최초계약일이 2020년 3월 31일일 때, 1개월 후의 월계약해당일은 2020년 4월 30일

→ 2020년 4월에는 계약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산한 연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 원」을 최저보증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 일로 연금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피보험자(계약자)의 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5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5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③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증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지체없이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xx년 10월 8일(목)인 경우 10/9(금, 한글날), 10/10(토), 10/11(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목)부터 3영업일인 10/14(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

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제41조(분쟁의 조정)**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 보험금제도

지급기한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
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및 연금 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확정이율
 - 가입 후 경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공시이율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기초서류 중 하나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청약서 등의 서식 등이 기재된 서류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bki.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상품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운용자산이익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 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가중평균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 ③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25%(일단위 복리 0.003403%) 및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일단위 복리 0.002726%),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0%(일단위 복리 0.001366%)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의 변경내역 및 산출방법 등을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bki.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매월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외부지표금리(국고채수익률 등 시중 금리) 및 향후 운용수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일정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연단위 복리 0.8%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0%),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0.8%)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단위 복리 1.0%)로 적립됩니다.

- ⑤ 제1항 제1호의 확정이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율을 말합니다.

제9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 ① 장기유지보너스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발생하며,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
 -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장기유지보너스율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장기유지 보너스율
6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	1.0%
12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2.0%

- ② 제1항의 해당일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중에는 실제 납입일(선납시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납입완료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제외한 계약자적립액(장기유지보너스 포함)에 한하여 계산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연금개시일 포함)에 한하여 적립합니다.
- ④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연금개시나이가 변경(단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변경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연금개시일 포함)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며,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을 위해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⑦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장

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제38조(해약환급금)**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장기유지보너스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계약자에 한하여, 계약자의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유효

법률적 행위가 당사자나 법률이 의도한 본래의 효과나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책임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10조(주소변경통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등 이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갖는 의무를 말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함께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 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 암벽 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 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 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0%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승낙 거절기간 예시

7월 1일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30일 이후인 7월 31일까지 승낙 거절 가능합니다.

승낙 거절 기간	
7.1	7.31
제1회	
보험료 납입	

⑤ 계약자는 청약할 때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종신연금형 기본연금형: 10년보증, 20년보증, 30년보증,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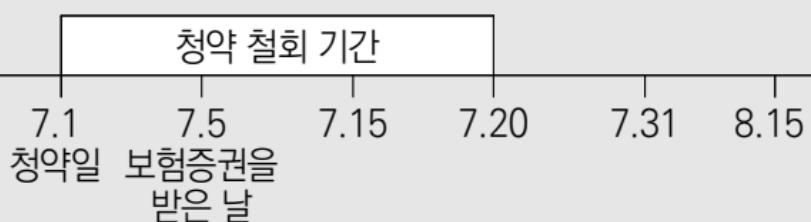
다만, 청약한 날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청약의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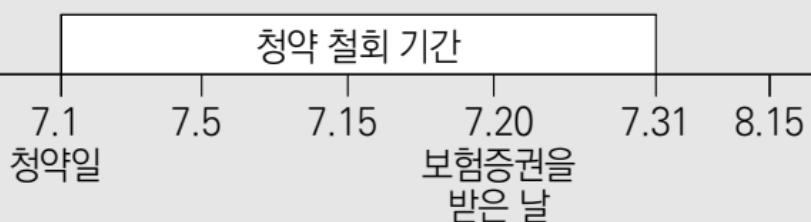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청약한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 철회 기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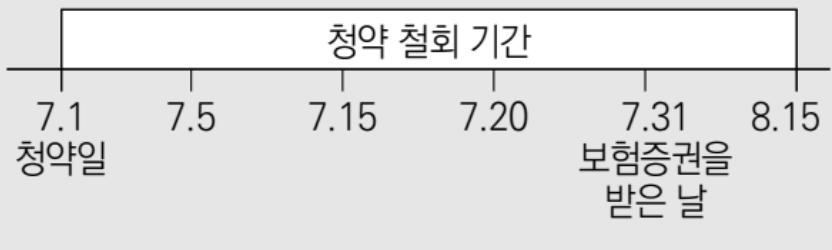
예시1) 만 65세 미만인 계약자가 7월 1일 청약 후 7월 5일 보험증권을 받은 경우



예시2) 만 65세 미만인 계약자가 7월 1일 청약 후 7월 20일 보험증권을 받은 경우



예시3)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7월 1일 청약 후 7월 31일 보험증권을 받은 경우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자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의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bki.co.kr)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에서 공시합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걸쳐 계약자 본인으로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 규정」 제4-35조의 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2. 기본보험료
 3. 연금개시나이
 4. 연금지급형태
 5.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6.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 납입기간과 변경 후 납입기간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③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액

기본보험료를 가입할 때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도 줄어들며,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연금개시나이의 범위 중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개시 전일까지 다음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종신연금형: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2.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확정

(주)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와 연금개시나이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 상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

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90년 8월 2일

예시1) 2020년 1월 11일에 계약할 경우

$$\begin{aligned} \Rightarrow 2020\text{년 } 1\text{월 } 11\text{일} - 1990\text{년 } 8\text{월 } 2\text{일} \\ = 29\text{년 } 5\text{월 } 9\text{일} \Rightarrow \text{보험나이 } 29\text{세} \end{aligned}$$

예시2) 2020년 2월 11일에 계약할 경우

$$\begin{aligned} \Rightarrow 2020\text{년 } 2\text{월 } 11\text{일} - 1990\text{년 } 8\text{월 } 2\text{일} \\ = 29\text{년 } 6\text{월 } 9\text{일} \Rightarrow \text{보험나이 } 30\text{세} \end{aligned}$$

제23조【계약의 소멸】

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제24조【계약의 이전】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④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 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되지 않은 계약

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곤란하게 될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⑤ 계약이 이미 실효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 ① 이 계약은 소득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이하 “연금계좌 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을 말합니다.

연금수령요건

- ①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② 만 55세 이후 수령
-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한도액=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주1)} \text{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text{연금수령연차}^{주2}))} \times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 일을 과세기간 개시일로 합니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요건 없음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요건 없음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 연금 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3%~5.5%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 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 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 ⑧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종신연금 형의 경우 잔여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 확정연금형의 경우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6조【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하며,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회 보험료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준용

어떤 사항, 사건 등에 관한 법령 또는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사건,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제외한 최대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계약자적립액 산출 시 적용된 이율로 적립하며, 당해 보험료 납입해 당일에 대체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0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 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

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8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④ 납입유예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매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 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약체결비용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판매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계약관리비용

계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운영비 등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제31조【잔여 보험료 납입종료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 경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 이후부터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잔여 보험료의 납입종료(이하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시점의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는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기존에 보험료 납입유예를 1회 이상 신청한 계약자
 2. 기존에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계약자
- ③ 계약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기본보험료의 2배와 2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회사에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할 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퇴직: 퇴직증명서
 2.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3.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입·퇴원확인서
- ⑤ 계약자는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전일까지의 기간(이하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이라 한다)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 ⑥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후 3년 이내에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시점부터 신청취소일까지의 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제8항에서 정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일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 동안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11항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 중 제11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시점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제8항에서 정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일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은 잔여보험료 납입종료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다가오는 월계약해당일부터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장되어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 ⑩ 회사는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 중 제11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의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계약의 종료[제11항에서 정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하며, 잔여보험료 납입종료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⑪ 회사는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 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⑫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 이후에는 제11항에서 정한 금액을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므로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전자문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른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방법 및 신청가능기간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계약자적립액이 제4항의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 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공제금액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 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 하며, 이 계약의 적립이율로 적립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8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부활(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 ⑦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4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35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8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 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8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제8조(공시 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⑤ **제35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9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의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4조(계약의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사정변경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계약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bki.co.kr)의 “상품공시실 → 적용이율 →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공시합니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내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확정이율에 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한 이율로 합니다.

제40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무배당 보험

무배당보험은 계약자에게 따로 계약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으로,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

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은 유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1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가 2017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자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정신적·심리적 원인의 곤궁, 경솔함 또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47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제4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① 연금(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종신연금형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종신 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 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 리비용을 차감한 연금액을 지급(10 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 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② 계약자는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서 정한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종신 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 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 리비용을 차감한 연금액을 지급(10 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 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확정 연금형	연금지급기간(5 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 년, 100세((101 세-연금개시나 이)년))의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 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연금액을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동 안 지급

- (주) 1.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순보험료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기준으로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개시시점까지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계약 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을 최저보증 합니다.
2.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기간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6.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적 상속인이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5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5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7.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9. 연금지급형태의 100세 보증 및 100세 확정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100세 보험년도 말까지 보증 또는 확정 지급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립이율 계산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제23조 제2항)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제3조)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적립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이내 : 적립이율 의 50% 1년초과기간 : 적립 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제38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적립이율 의 50% 1년초과기간 : 적립 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적립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 시효(제43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6.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별표3〉 공제금액 안내표

공제금액 안내표

■ 수수료 안내표

-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30세 가입, 60세 개시, 20년납,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1~7년	8~10년	11~20년	20년 이후
5.43%	3.43%	2.50%	0.67%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 비용	매월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2.00% (6,000원)
	계약관리 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3.43%(10,300원) 납입기간 이후: 2,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
연금수령 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 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해약공제비용

이 상품은 해약공제비용이 없습니다.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 보험료	계약유지, 관리비용	납입 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

(주) 무배당 IBK e-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_2501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 용어	해 설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 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결정됨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약관에서 인용한 법령내용(가나다 순)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령은 2024년 01월 기준이며, 해당 법령 개정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우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7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7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81
민법	83
보험업 감독규정	84
상법	85
상법 시행령	86
소득세법	87
소득세법 시행령	9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
예금자보호법	105
의료법	107
전자서명법	108
조세특례제한법	109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 제47조 【개인정보보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 제17조 【청약의 철회】
제35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제41조【분쟁의 조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
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
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
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
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
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
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
매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를 말한다.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
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
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

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연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약관 제44조【약관의 해석】

약관 제23조【계약의 소멸】

약관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조(신의성실)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좋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보험업 감독규정

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5. "연금보험"이란 일정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 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6. "금리연동형보험"이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 금리 등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보험 을 말한다.

(생략)

9. "주계약"이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10. "주피보험자"란 피보험자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 보험자를 말하며, "종피보험자"라 함은 주피보험자에 종 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생략)

13. "평균공시이율"이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

(생략)

상법

약관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시행령

약관 제20조 【계약의 무효】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소득세법

약관 제25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생략)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

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생략)

제20조의3(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

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 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기본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 가족을 포함한다)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 아동”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1. 삭제
 2. 삭제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 ⑤ 삭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약관 제25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가. 천재지변
 -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 투자증권 중개계약
 -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 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 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 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 연간 1천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 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 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 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 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 ⑤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1.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계좌(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⑤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

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2.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 제47조 【개인정보보호】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 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

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

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 제47조 【개인정보보호】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생략)

제28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각 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같은 조제2호에 따른 보험업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생략)

예금자보호법

약관 제4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 ②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 기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와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전의 부보금융회사가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 ⑥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⑧ 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

에게 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⑨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등에게 가지는 항변(抗辯)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 [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④ 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의료법

약관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삭제
- ⑤ 삭제
- ⑥ 삭제
- ⑦ 삭제
- ⑧ 삭제

전자서명법

약관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약관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약관 제25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MEMO

상생금융 보너스특약 약관

본 약관은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
기간의 계약 조건을 기술한 내용으로서 귀하께서 이 보험에
가입하신 때부터 동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 저희 회사와 귀하간
의 권리, 의무 및 그 이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규정이
므로 꼭 읽어보시고, 소중히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개발 담당자: 상품개발부 김세희(02-2270-1457)

상생금융 보너스특약 약관

제1관 용어의 정의	113
제1조 【목적】	113
제2조 【용어의 정의】	113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13
제3조 【특약의 적용대상】	113
제4조 【특약의 성립】	113
제5조 【구비서류】	114
제6조 【특약의 소멸】	114
제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14
제3관 특약의 내용	115
제8조 【상생금융 보너스에 관한 사항】	115
제4관 기타사항	115
제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15

상생금융 보너스특약 약관

제1관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해 계약자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8조(상생금융 보너스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입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하며 소상공인을 포함합니다.
- 나. 군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예비역 제외) 이하 군인이라 합니다.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특약의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주계약의 계약자가 특약을 신청한 날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경우(소상공인 포함) 또는 군인인 경우
2. 주계약의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 주계약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제4조【특약의 성립】

- ① 이 특약은 이미 체결된 주계약의 계약자가 제3조(특약의

적용대상)의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 주계약의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을 통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특약을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제5조【구비서류】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계약자가 중소기업 재직중인 경우 중소기업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계약자가 중소기업 재직중(소상공인 포함)임 또는 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상생금융 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 이 특약의 효력도 없어진 것으로 합니다.
- ② 주계약이 제3조(특약의 적용대상)의 제2호 및 제3호를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제3조(특약의 적용대상)의 제2호 및 제3호를 다시 만족하게 되더라도, 이 특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이 특약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6조(특약의 소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기본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효력이 없어진 경우 주계약이 부활(효력회복)을 하면 동시에 이 특약도 부활(효력회복) 한 것으로 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 시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볼니다. 다만,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관 특약의 내용

제8조【상생금융 보너스에 관한 사항】

- ① 상생금융 보너스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상생금융 보너스 해당금액을 상생금융 보너스 발생일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상생금융 보너스 발생일	상생금융 보너스 해당금액
6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MIN[기본보험료 × 5%, 1만원] × 60

- ② 피보험자가 상생금융 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생금융 보너스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관 기타사항

제9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MEMO

해당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 및 제공되었습니다.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칠판로 37
IBK연금보험콜센터 : 1577-4117, 1644-4117
www.ibki.co.kr

- 제작 : 방카슈랑스영업부
- 관리번호 : 방카슈랑스영업부 제2025-292호(2025.08.26)